

개인정보보호 보험(공제)가입 의무화 안내메일

<협회에서 법령상 의무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최근 국회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금년 6월13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보험·공제 의무가입 대상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1천명 이상의 이용자(고객)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만일, 정보통신망법령에서 정하는 최저가입금액 이상으로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년 6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 보험·공제 의무가입과 관련하여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고, 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보험·공제가입 의무화

1. 금년 6월13일부터 「개인정보보호 보험·공제가입」 의무화

국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18.6.12), 금년 6월13일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최대 2천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2. 이용자(고객) 개인정보 1천명 이상 보유자는 모두 의무대상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보험·공제 의무가입 대상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란 기간·별정·부가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유무선 통신망, 컴퓨터 및 그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18~4.1) 하고, 공청회 개최(3.13) 등을 통하여 보험·공제 의무가입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기준을 발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체적인 의무가입 대상자와 관련하여, 업종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모바일 상에 웹사이트·앱·블로그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1천명 이상의 이용자(고객)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3. 최저 의무가입 금액은 이용자(고객)수에 따라 0.5억원~10억원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공제 의무가입 대상자의 최저 의무가입 기준금액은 이용자(고객) 수와 매출액 규모별로 9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0.5억원에서 10억원까지로 설정하였고, 법령에서 정한 의무 위반시 위반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보험·공제 등 최저 가입금액 기준(시행령 입법예고)

이용자수	매출액	최저 가입액	예상 보험료
100만명 이상	800억원 초과	10억원	1,250만원
	50억원 초과 ~ 800억원 이하	5억원	625만원
	50억원 이하	2억원	250만원
100만명 미만 ~ 10만명 이상	800억원 초과	5억원	625만원
	50억원 초과 ~ 800억원 이하	2억원	250만원
	50억원 이하	1억원	125만원
10만명 미만 ~ 1천명 이상	800억원 초과	2억원	250만원
	50억원 초과 ~ 800억원 이하	1억원	125만원
	50억원 이하	0.5억원	62만원

- * 이용자(고객)수 :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저장·관리한 평균 개인정보
- * 매출액 : 전년도말 기준 전체 매출액(또는, 향후 1년간 예상 매출액)
- * 예상 보험료 : (최저 가입금액) X (추정 보험요율 1.25%), 요율은 4월말 확정

4. 손해보험사와 SW공제조합은 5월경 보험·공제상품 출시 예정

정보통신망법상 보험·공제 의무가입과 관련하여, 보험개발원의 보험료가 확정되면 손해보험사들은 5월경에 보험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SW보증기관인 SW공제조합도 5월경에 SW사업자들을 위한 특별공제상품을 출시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W공제조합은 SW사업자들을 위한 특별공제상품이므로, 위 <표>에 예시된 보험사의 보험료 보다 10% 정도 ‘저렴한 공제료’, KB손보·삼성화재·DB손보와 업무제휴를 통해 보상하는 ‘확실한 보장’, 온라인 공제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가입할 수 있는 ‘간편한 절차’ 등을 통해 SW사업자들에게 필요한 공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원님들께서는 금년 6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 보험·공제 의무가입과 관련하여, 5월경에 출시될 예정인 보험상품 또는 SW공제조합의 공제상품 등을 비교하시고, 법령상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SW공제조합 전략기획팀 02-2141-7852)